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. 5. 17 선고 2018가단502 판결 [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5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 : 별지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김일순

별지